

國際海洋法會議의 推移와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展望

The Transi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Future prospect of the Deep Sea Fishery in Korea

金 宇 盛

Woo Seong Kim

〈차 례〉

- | | |
|----------------------------|------------------------------|
| I. 序 言 | Ⅱ. 제3차 國際海洋法會議의 懸案問 題 및 그 結果 |
| Ⅱ. 제3차 國際海洋會議가 開催되기 까지의 經緯 | Ⅲ. 對策 및 結算 |

I. 序 言

바다를 分割할 目的으로 人類의 海洋活用을 規制할 새로운 國際法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974年 6月 20日부터 南美的 「베네주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제해양법 제 3차 本會議가 長長 10週間の 會議를 거듭한 후 8月 29日 그 막을 내렸다.

이 제3차 국제해양법회의는 UN史上 가장 큰 政治問題를 다룬것이지만 그 결과는 豫測한 바 대로 150개국 2천여 대표들이 100여안건을 놓고 舌戰한 거듭한 끝에 합의할 본 것은 차기회의의 인시, 장소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아무런 결론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회의의 결과가 진언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時間的인 문제이지 早晚間 領海 12海里, 經濟水域 2百海里, 國際海峽의 自由通航, 深海底의 國際的 管理公海대책 등의 重要問題가 매듭지어 질 것이 거의 確實하게 된 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되는 날 이러한 一聯의 結果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또한 莫甚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國際海洋法會議 開催의 歷史的인 背景, 各國의 腹案, 現在의 國際的인 추세 및 전망, 우리나라가 취하여야 할 대책 등에 걸쳐 살펴봄도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되기에 여기에 論하여 보기로 한다.

Ⅱ. 제3차 國際海洋法會議가 열리게 되기까지의 經緯

科學의 發達, 海洋資源수요의 急증, 水質汚染, 「이테올로지」의 대립, 국가관의 利害相反 등의 時代的인 變遷은 3世紀餘에 걸쳐 國際海洋法上 지배적이었던 「Hugo Crotius」의 「自由海論」의 「公海自由의 原則」 「公海使用自由의 原則」과 「Bynker Shook」의 「着彈距離說」에 의한 「領海 3海里」가 그동안 迂廻曲折을 겪어 現在 海洋分割의 段階에 이르렀다. 오래 전 날의 것은 생략하고 20世紀 後半期에 들어와서 부터의 國際海洋法의 由來를 먼저 살펴보면 元來 국제법이란 領海, 公海, 公海漁業 및 대륙붕 등 海洋에 관한 국제법규(관습 및 조약)

경 영 톤 지

의 總體를 뜻하며 국제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국제법의 역사와 같이 오랜 것이며 또한 어떤 의미로서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양국제법이라는 말은 1958년 및 1960년의 제1, 제2차 國際聯合 海洋法會議(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말이다. 제1차 회의는 1958년 2월에 「Geneva」의 UN 「유럽」본부에서 8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1947년의 UN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된 國際法 委員會가 중심이 되어 약 10년간 검토끝에 海洋法の 草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會議에서 채택된 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1) 領海 및 接續水域¹⁾ 관한 條約(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²⁾

그 내용은 領海의 法定地位, 領海의 上空, 海床, 床下地(Sub-Soil)의 法的地位, 通常基線, 直線基線³⁾, 基線內의 水域, 領海外側의 限界, 港, 灣, 碇泊地, 島, 干出地, 二國間의 領海의 限界, 河口, 無償通航權⁴⁾, 연안국의 의무 및 보호권, 通航中의 외국선박의 의무, 외국선박에 대한 課稅, 외국선박 내에서의 逮捕, 민사재판권의 행사를 위한 선박의 抑留, 公用船, 船單, 艦接續水域 및 他 條約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公海(open Sea)에 관한 조약

그 내용은 公海의 定義⁵⁾, 公海의 自由⁶⁾ 비연안국, 항행권(항행의 자유), 선박의 국적 및 지위, 公用선박, 군함의 특권과 면세, 기타의 정부공용 선박의 면세, 항해의 안전, 충돌사건에 관한 형사재판 관할권, 해난구조의 의무, 노예매매의 금지, 海賊, 臨海權, 追跡權, 해

1) 국가가 외국의 明示 또는 默示의 동의에 의하여 白國領海에 隣近하는 一定範圍의 公海에 있어서 관세 위생 등 특정사항에 관한 管轄權의 행사가 인정되는 水域으로 隣接水域, 보충수역이라고도 한다. 현재 국제법하에 있어서의 조약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나 일반적인 국제법상의 別度로 認定하라는 주장이 강하다. UN의 국제법위원회가 1951년 작성한 「대륙붕과 그 관계사항에 관한 조약초안」을 관세·제정·위생상의 단속을 위하여 沿岸부터 12海里를 일반적으로 점속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署名國은 44개국임.

3) Straight Base-Line, 영해의 폭은 연안의 저조선으로부터 측정한 것이 원칙이나 연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연안근거리에 쫓아서 섬이 있는 곳에서는 적당한 諸點을 直線으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할 수 있음.

4) innocent passage: 일반 국제법상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안전, 공공질서, 재정적이익, 위생에 얽가 되지 않는 한 영해를 자유로이 항행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음을 뜻하며 潛水航行이나 領海上空飛行은 허용하지 않음.

5) 어느 국가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따라서 어느 국가도 배타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없는 특수해역 즉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6) 公海自由의 原則: 국제법상 어느 국가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해역인 「공해는 자유이다」라는 원칙.

○ 公海使用自由의 原則

항행, 어업, 상공비행 등을 위하여 누구든지 공해를 자유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國際海洋法會議의 推移와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展望

수오염, 해저전선과 송유관선 및 타조약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條約(Convention on the Fishing and Conven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그 내용은 어업의 권리와 자원보존의 의무, 公海 생물자원의 보존, 어업국의 보존의무, 새 참가국에 대한 기준조치의 적용, 연안국의 특수이해관계, 비어업국 비연안국에 있어서의 특수이해관계, 분쟁의 강제적 해결 및 固着어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대륙붕에⁷⁾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그 내용은 대륙붕의 범위 및 한계⁸⁾, 沿岸國의 權利⁹⁾, 沿岸國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와 공해의 자유, 대륙붕의 개발과 海底電線 및 送油管線, 海底터널, 대륙붕에 관한 條約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의 처리 등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이들 조약의 가장 중요한 爭點은 領海의 幅과 어업문제였으며 領海의 幅에 대하여서는 결정을 보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미루었다. 이 제1차 회의에서 領海의 幅을 결정하는데 실패한 이유를 해양의 이동상태가 다양하고 각국의 이해관계 서로 상반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領海를 확장하려는 주요이유는 沿岸어업의 보호에 있고, 좁은 領海를 고수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업선진국 및 강대국의 활용중의 어장보존 및 軍事 通商 등의 목적을 위한 航行의 自由를 最大限 누린다는 것이 明白하여 졌다.

第2次 會議은 1958년의 UN총회에서 1960년에 개최하여 領海의 幅 問題에 대하여 심의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이 第2次 會議은 앞에서 말한 對立된 두가지 主張을 調和시키기 위하여 漁業水域이라는 새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개념은 領海를 3~6海里까지로 하고, 그 바깥쪽에 距岸 12海里까지의 범위내에서 어업에 관한 沿岸國의 排他的 管轄權을 行使할 수 있는 水域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領海 밖 6海里를 漁業水域으로 하되 過去 5개년간 어떤 어업수역에서라도 어업실적이 있는 나라는 앞으로 10개년간은 계속해서 당해수역에서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하여 1표차로 2/3선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제3차 국제해양법회의 뿐만 아니라 해양법 질서확립에 까지 혼란을 초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10년간에 12海里 혹은 그 이상에 걸쳐 漁業水域 또는 專管水域을 설정하거나 확장

- 7) 영해수역 밖으로 수심 200m에 이르거나 또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해저수역에 있는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한 수심까지의 해저수역의 海床 및 下層土를 말하며, 실요적 또는 관습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인 선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부수역의 공해보시의 범기지위와 상부 空域의 범기지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8) 동일한 대륙붕이 2개의 對向國가 사이에 있거나 隣接國가의 영토에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限 中間線 또는 同一거리원칙에 의하여 경계를 정한다.
- 9) 연안국은 대륙붕에 대하여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권적 행사를 한다고 되어있고, 천연자원이란 地下鑛物資源은 물론 海床의 定着漁類와 같은 有機生物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경 영 본 지

하는 나라가 속출하여 더욱 더 해양질서는 문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양질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美·蘇는 1968年頃부터 수차 관계자 회의를 열어 打開策을 모색한 결과 美·蘇領海條約案¹⁰⁾을 작성하여 1969年初부터 각국의 반응을 打診하기 시작했고, 또 深海海底利用에 관하여는 「몰타」제안¹¹⁾을 기초로 하여 UN총회에서는 「深海海底平和特別委員會」를 設置할 것을 결의하고, 그 후 이것을 상설위원회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계속하여 1970년에 「국가관할권의 범위를 넘는 해저 및 그 地下를 규정하는 原則宣言」을 작성해서 동년 12월 27일 UN총회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72년의 「산토도밍고 宣言」¹²⁾, 73년 「아디스 아바바 宣言」¹³⁾, 74년 3월의 「나이로비 회의」¹⁴⁾ 등의 회의를 거듭하면서 200海里 經海水域案과 12海里 領海案은 굳어져 갔으며, 海洋先進國對 開發途上國 利害關係에 얽힌 對立은 더욱 明白하여 졌다.

Ⅲ. 第3次 國際海洋法會議의 懸案問題 및 그 結果

제3차 국제해양법 회의를 개최하게 된 動機는 앞에서 提及한 바 있는 沿岸國의 一方的인 領海擴張에 대응하는 美·蘇領海條約案의 제시와 「몰타」深海海底利用 提案의 두가지로 볼 수 있다. 本 第3次 會議의 懸案問題는 議題 100餘案件을

- ① 議事進行方法中 表決方法問題
- ② 領海 12海里와 國際海峽 通航 및 群島理論問題
- ③ 排他的 200海里 經海水域設定 및 漁業問題
- ④ 大陸棚 및 深海海底資源開發問題
- ⑤ 海洋汚染防止問題
- ⑥ 海洋科學檢査問題

의 6가지로 集約시킬 수 있다.

그中 ①은 모든 議題가 名譽의 利害에 直結되기 때문에 表決방법 결정부터가 難望이

- 10) 그 요지를 들어보면 모든 나라는 12海里의 범위내에서 領海의 幅을 자유로 결정할 수 있으며, 12海里보다 좁은 영해를 설정한 나라는 12海里까지의 잔여부분은 漁業水域으로 할 수가 있고, 일대에 의하여 폐쇄된 國際海峽에 있어서는 船舶 및 航空機에 대해서 公海의 自由通航을 인정한다. 또 沿岸國은 限海 또는 어업수역에 인접한 공해수역에 있어서의 어업에 우선권을 가지며, 어업자원의 재생산을 위하여 부자를 하고 있거나 어민 어업이 연안국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어종의 洩용어획량중 자국이 어획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11)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심해해저는 어떤 나라의 영유권도 할 수 없으며 평화 목적에만 이용하고 그곳에서의 자원개발과 같은 경제활동은 국제경제 관리하에 두어 그 활동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제1차적으로 開發途上國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원칙을 포함한 조약안을 「몰타」가 1967년 UN총회시에 작성제출한 것임.
- 12) 200海里 世襲海岸과 經濟水域이 등장하여 開發途上國들의 支持를 받음.
- 13) OAU(아프리카 統一機構)에서 200海里 經濟水域案을 채택 宣言.
- 14) 77개 開發途上國會議로 統一案 채택은 실패하였으나 12海里 領海 및 200海里 經濟水域에 대한 原則的 合意到達.

國際海洋法會議의 推移와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展望

상되었던 것이다. 결과는 예상한 대로 절대다수인 開發途上國들은 委員會는 過半數, 全體會議은 투표국의 2/3이상의 찬성의결을, 先進國들은 滿場一致의 表決方法 주장으로 맞서 결국 懸案問題의 하나도 결의를 못보게 되었다.

②의 領海 12海里 問題는 1,2次 海洋法會議 이후 계속회의 進전에 나타난 문제로 17세기의 着彈距離의 유물인 領海 3海里를 지지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美·英·日本 등 20개국내외에 不遇하고, 反而 연안국의 이익을 고려한 開發途上國들은 領海 3海里를 海洋帝國主義의 遺物이라고 비난하면서 廣汎한 領海擴張을 들고 나왔다. 그중 50여개국이 領海 12海里를 주장하고, 中南美 7개국과 阿의 8개국은 50~200海里 領海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각국의 태도를 보면 中共 등은 200海里 領海支持線에서 海洋先進國들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고, 日本 등은 3海里를 고수할 수 있는데까지 고수하다가 마지막으로 대세에 밀려 12海里案을 支持할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AA¹⁵⁾開發途上國들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12海里案에 同調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또 대부분의 開發途上國들은 領海 12海里 確定을 양보할 경우 그 前提條件으로 廣汎한 排他的 經濟水域의 新設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에는 國際海峽 通航問題인데 이것은 만약 앞으로 12海里 領海가 확정되면 아래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大韓海峽을 위시한 世界 116개의 海峽이 領海化되어 無害通航만 이 인정되고 航空機는 그 上空을 비행할 수 없게 되고 潛水艦은 浮上하여야 하는 등의 制限을 받게 된다. 따라서 美·蘇 등 선진계국은 2海里 領海認定 대신 국제해협 的 進진과 같은 自由通航權을 주장하고 있으나 海峽國側은 例外를 認定할 수 없다고 맞서 강력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自由通航問題는 高度의 政治的 軍事的인 요소를 內包하고 있어 앞으로 海洋法會議 全體의 成敗를 左右할 만큼 頂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의 주요 해협들>

해협	관계국	경유	폭(海里)
대칸	한국, 일본	黃海~東海	23
스카우(津輕)	日本本土, 北海道	東海~太平洋	10
소야(宗谷)	日本(北海道), 蘇(샤할린)	東海~오호츠크해	20
말라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洋~南支那海	8~20
문보크	인도네시아	인도洋~자바해	11
호름즈	이란, 오만土侯國	페르시아~인도洋	8
지브롤탈	스페인, 모로코	대서양~地中海	18
도버	영국, 프랑스	대서양~북해	10

또 群島理論問題는 국토가 大小에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群島國家들은 개개의 섬을 따

15) Asia Africa 계국을 뜻하며 「라틴 아메리카」계국을 합하여 이 그룹은 77개국이 동조하고 있음.

경 영 문 지

로히 선마다 領海를 設定할 것이 아니라 가장 外側に 있는 섬들을 直線基線으로 하여 領海를 設定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이론의 제안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모리셔」, 「스피지」의 4개국으로 되어 있고, 日本은 이 主張에 同情的 態度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앞서 群島内の 水域에 선박의 自由通航權 保障을 不可缺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우고 있다.

③중 排他的 200海里 經海水域設定問題는 지난 제3차 海洋法會議의 최대의 「이슈」로 등장한 「테마」로 이는 1972년 여름 「케냐」가 提案하자마자 순식간에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대부분의 開發途上國으로 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 水域은 資源管轄水域이라고도 불리는 水域으로 200海里의 넓은 水域内에서는 沿岸國만이 이 水域内의 一切의 어업 및 礦物資源에 대한 排他的 管轄權을 가짐과 同時에 海洋汚染도 규제하는 權限을 갖게 한다는 내용 즉 이른바 「資源領海」의 新設主張인 것이다. 加奈陀, 호주, 「뉴잉글드」 諾威 등 沿岸海洋資源이 풍부한 나라들이 이 案의 동조국이고, 日本・蘇聯・英國 등의 전통적인 遠洋漁業國 및 內陸國 또는 地理的으로 不利한 位置에 있는 海岸線이 짧은 나라들은 이같은 主張에 대해 一部 沿岸國들에게만 一方의인 利得을 주는 것이며 海洋利益의 公正한 分配原則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萬一 우리나라도 지지키로 한 이 經濟水域設定이 앞으로 승인된다면 現在 公海로서 어느나라에도 자유로히 開放되어 있는 海洋의 약 40%가 特定沿岸國의 管轄權下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漁業問題인테 현재까지 提出되어 있는 主要한 漁業條約案은

- ① 經濟水域新設에 바탕을 둔 最大限 200海里까지의 어업자원을 연안국의 排他的 管轄權下에 두자는 것.
- ② 領海에 인접하는 公海水域에서의 어업수역 설정란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一定範圍内에서 沿岸國의 限定的인 우선권만을 인정토록 하자는 日・蘇 등의 보수적인 제안
- ③ 原則的으로는 領海外에서의 沿岸國 漁業水域設定權은 인정하지만 다른 나라의 利益도 어느 정도 別度的으로 보장토록 하자는 美・蘇・「뉴질랜드」 등의 제안으로 이 ③안은 ①②案의 중간적인 타협적 안이라 할 수 있다. 數的으로 보면 ①案과 ③案 支持國이 大勢를 占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200海里 經濟水域과 漁業水域 ①案이 設定되면 日本과 우리나라가 크게 利得을 입게 되고, 美・蘇・카나다・「인도네시아」 등이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④중 대륙붕문제는 現행 대륙붕조약은 대륙붕의 정의부터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明確하게 할려는 움직임으로 첫째 經濟水域提案을 基礎로 최대한 200海里의 海底資源을 깊이와 海底地形에 관계없이 연안국에 귀속시키자는 案과 海底에 관한한 一定한 距離基準에 의해 沿岸海底地域을 決定토록 하자는 案의 2案이 나왔는데 이들 2개의 제안은 現행 大陸棚條約

國際海洋法會議의 推移와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展望

下에서의 200m의 깊이 및 그 연장의 개발가능 한도라는 水深을 기준한 종래의 대륙붕개념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는 水深과 거리 2개의 기준을 並用하는 방법으로 쓰면이 제출한 水深 500m, 거리 100海里案과 和關, 「싱가포르」 및 內陸國그룹의 수심 200m, 거리 40海里案이 있고, 셋째는 距離와 海底의 地形概念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距岸 200海里 밖에까지 地質的인 大陸棚이 뻗어있을 경우는 그 全体에 대하여 現행 국제법상으로 기득권으로 확립되어 있듯 대륙붕에 관한 權利의 存續을 확보토록 하자는 案인데, 이 案은 넓은 대륙붕을 갖고있는 「아르헨티나」·濠洲·加奈陀·英國 등이 내세운 案이다.

이 대륙붕을 둘러싼 국가간의 대립의 가장 큰 이유는 대륙붕이 石油를 비롯한 광물자원의 寶庫로 평가되기 때문이며, 아랍든 海底 3,000~3,500m까지 개발이 가능함이 만큼 발달한 現代科學技術은 從來의 大陸棚의 定義를 뒤엎도록 強要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다음에 특정국가 관할 밖에 있는 深海海底資源開發에 關해서는 1970년 여름 美國이 제출한 조약안을 기점으로 하여 71년말까지 日本 등 각국에서도 여러가지 제안을 내 놓았다. 이들을 기초로 조약안작성의 노력이 속속 진행되어 온 결과 「深海海底資源은 人類共同의 財產」이라는 점, 그리고 開發을 규제하기 위한 國際機關을 設립한다는 原則에 關해서는 거의 合意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實際로 자원개발을 어디서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關해서는 이를 國際機關에 獨占시켜야 한다는 開發途上國의 주장과 國際기관으로부터 許可를 얻는 私企業에 맡겨야 한다는 先進國 主張이 正而으로 맞서 있으며 이와같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先進國側은 經濟水域 200海里承認을 「나타」조건으로 내놓고 있다.

⑤의 海洋汚染防止 또는 海洋環境保全問題는 오늘날 全人類의 課題로 등장했으며 2년전의 「스톡홀름」 환경회의를 비롯하여 各國 政府間의 IMCO(海事機關) 등의 전문기관을 통한 海水汚染防止條約案 作成 등 UN內에서도 多角的인 대처가 행해지고 있다. 이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汚染防止에 關聯된 沿岸國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 특히 「汚染防止水域」의 決定的問題가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된 것으로 해양선진국들은 沿岸國이 汚染防止의 實効를 거두기 위해 이 捕限을 領海 밖까지 擴大할 경우 外國船舶의 航行 등에 대한 不當한 간섭이 可能할 것으로 보고 反對대지 申중을 기하고 있으며, 관계국들은 관계국끼리 被害補償을 위한 條約締結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⑥의 문제는 현재 軍用探査가 큰 문제로 되어 있는데 從來 科學探査의 自由는 「公海의 自由」下에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沿岸國의 管轄權擴大傾向을 반영하여 그 探査도 領海 및 經濟水域 등의 各種 水域內에서는 沿岸國의 國內法에 의해 規制되어야 한다는 開發途上國의 主張과 이들 水域內에서도 沿岸國調查에 대한 參加 및 結果公表 등의 條件을 만족시켜 준다면 原則的으로 어떤 나라의 科學探査도 認定되어야 한다는

경 영 문 제

美國 등 해양선진국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으며 현재 각 국가간에는 領海 밖에서의 探査結果에 대한 선진 科學國과 후진국가 사이에서 막후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음에는 이들의 현안문제에 대한 각국의 동향중 큰 것을 들어 살펴보면

㉠ AA제국 및 남미제국

12海里의 領海, 200海里의 經濟水域 設定 및 이것의 沿岸國의 管轄권 강경주장과 남미제국의 이 案에의 급속한 접근, 澳洲·「뉴지랜드」는 200海里 經濟水域 보다는 약간 그 幅이 좁은 漁業水域을 주장하고 있지만 「AA」제국안에 점차 접근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미 국

200海里의 經濟水域案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참치류의 국제관리 이외는, 「송어」, 「연어」류에 대하여서도 沿岸國의 우선권부여 등 어종에 따라서는 근본적으로는 開途國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이 바라는 가장 큰 것은 船舶의 無害航行權이며 萬若 이 航行權이 인정되면 魚類資源問題에 관하여서는 200海里도 甘受한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

㉢ 加奈陀

200海里 經濟水域의 幅은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연어」, 「송어」는 沿岸國 우선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것과 「바타」로 200海里 經濟水域論에 合流할 기세를 보이고 있음.

㉣ 中 共

중공은 미·소 등 강대국의 이익을 開途國이 打破하여야 한다는 單純한 後進國 지지의 견해를 보이고 오다가 1973년의 제6차 Geneva 준비회의 언저리부터 자국 입장을 주장하는 태도로 변하고 있음.

㉤ 日 本

200海里 經濟水域案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沿岸國에 우선권을 인정하되 그 나머지는 遠洋漁業國이 어획한다는 주장을 테두리하고 있다.

㉥ 소 련

소련도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같은 견해이지만 溯河性魚類에 관하여서는 미국·加奈陀에 동조하고 있으며, 南方에서 많은 것은 北洋에서 찾는다는 등의 태도로 나오고 있다.

㉦ 내륙국들

그외에 특기할 것은 內陸國들의 동향인데 「오스트리아」, 「네팔」, 「아프카니스탄」 등의 여러 내륙국은 인접 인안국의 구역내에서 그 연안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어종자원에 대한 조업개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대로 지난 제3차 海洋法에서의 결과는 제기했던 100여개 안전중 어떤 안전에 대해서도 완전합의를 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차기회의의 日時 및 場所를 1975년 3월 17일부터 동 5월 3일까지 Geneva에서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그곳에서 1주일간 회의를

國際海洋法會議의 推移와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展望

더 연장하고 Geneva에서 새로운 海洋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7월중 「베네주엘라」로 다시 돌아와 「카라카스」 協約에 調印키로 합의한 것 뿐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완전합의는 아니나 대체로 합의로 굳어진 것은

㉠ 12海里 領海 ㉡ 200海里 經濟水域 ㉢ 深海海床資源의 國際機構下에서의 共有이고, 합의에서 보다 거리가 먼 중요한 안건은 ㉣ 美·蘇 등의 強大國이 요구하고 있는 國際海峽의 自由航行權 ㉤ 軍艦 및 潛水艦 등을 包含한 外國船舶의 領海通過에 대한 沿岸國의 規制權 ㉥ 沿岸國의 經濟水域 내에서의 漁撈·鑛物·石油 및 gas자원에 대한 獨占權 ㉦ 沿岸國의 200海里 밖의 大陸棚의 漁業資源에 대한 權利 등등 山積같이 많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미합의에 美·蘇·日本 등 海洋先進國들은 안도의 숨을 쉬고 있지만 이에 불만을 가진 開發國들은 一方的으로 排他的 管轄水域을 擴大하고 漁業制限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아롱든 시간적인 問題이지 早晚間 12海里 領海와 200海里經濟水域設定은 움직일 수 없는 世界의 大勢인것 같다.

IV. 對策 및 結語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經濟水域 200海里가 公式化되면 遠洋漁業國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 遠洋어업은 불과 지난 10여년동안 눈부시게 성장했다. 62년 어획고 1천t(총생산고의 0.2%)에 지나지 않던 것이 73년말에는 38만3천t(총생산고의 32%)으로 急伸張했다. 그래서 1억1천8백만 \$의 外貨를 벌어들였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획액 10%의 本國에도 들어섰으며 이 本國에도 오를 10%의 外貨를 벌어들여야 할 것이고 계속 발전시키 나가야 할 것이 우리들의 至急課題인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첫째 어업외교에 주력하여 우리나라 遠洋漁船이 進出하고 있고 또 進出할 수 있는 沿岸國들과 어업협력 또는 기술협력 등을 체결하여 漁船과 공동어로들의 體制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벌써 美·日·加·「스페인」 등 4개국과는 어업協定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도 어업협력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고 「스리랑카」 등 10개국과도 협력을 추진중이지만 더욱 이러한 외교활동을 적극화 시키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出漁隻數의 增加와 操業實績을 늘려 장차 국제해양법상 규제시 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特權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국제어장에서의 예상되는 높은 入漁料, 漁類波動을 契機로 漁具, 漁網類의 更新 및 北洋명태의 國內魚價 압박 등은 집중 分析하여 생산부터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再檢討로 遠洋漁業經營의 보다 高次元의인 合理化가 要項된다. 이러한 一聯의 施策이 強力히 推進되어 實效를 거두게 되면 前記한 諸國際海洋法의 規制가 縮結되더라도 우리 遠洋漁業은 萎縮됨이 없이 健全한 發展을 거듭하게 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統營水產專門學校 敎授)

(1974. 11. 29 접수)